

EU

유럽사법재판소, 음악샘플링은 패스티시(pastiche)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1. 개요

이 판결은 음악 샘플링과 저작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인 패스티시(pastiche)의 관계를 처음으로 직접 다룬 유럽사법재판소의 대재판부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건의 직접적 배경은 독일 음악 그룹 크라프트베르크(Kraftwerk)의 곡 ‘메탈 아우프 메탈’(Metall auf Metall)에 수록된 약 2초 길이의 리듬 시퀀스가 음반제작자인 Pelham 측의 곡 ‘누어 미어’(Nur mir)에 샘플링 방식으로 이용된 데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의의는 개별 음악 분쟁을 넘어선다. 사법재판소는 정보사회지침(2001/29/EC)(이하 ‘지침’) 제5조 제3항 (k)의 ‘패스티시’를 EU 법의 자율적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포괄조항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서 패스티시는 기존 저작물을 환기시키며, 이와 구별되는 차이를 수용자에게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그 저작물과 인식 가능한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를 형성하는 창작물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한 ‘패스티시 목적의 이용’이라는 요건은 이용자의 주관적 의도를 요구하지 않고, 원작을 아는 자에게 그 패스티시적 성격이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로써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를 모든 창작적 재이용의 일반조항으로 확대하지 않고, 유머, 풍자, 스타일 모방과 같은 특정 형식에 한정하지 않는 중간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 판결은 샘플링을 예술의 자유에 속하는 예술적 표현형식으로 인정하면서도,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투자보호와의 조화를 요구함으로써, 저작권 제한규정의 해석이 곧 기본권 형량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출발점은 1977년 Kraftwerk가 발표한 곡 ‘Metall auf Metall’이다. 이 사건의 원고 측은 이 그룹의 창립 멤버인 CG와 2020년에 사망한 RL의 권리승계인 YN이다. 문제가 된 이 곡은 이들이 발표한 ‘Trans-Europe Express’란 음반에 수록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의 피고 측은 SD와 UP이며, 이들은 1997년 Pelham이 발매한 음반에 수록된 곡 ‘Nur mir’의 작곡자들이다. 원고 측은, Pelham 등이 Metall auf Metall에서 약 2초 길이의 리듬 시퀀스를 전자적으로 복제, 즉 샘플링하여 Nur mir에 반복적으로 삽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 측은 Pelham 등이 해당 리듬 시퀀스를 직접 다시 연주하여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원고 측은 먼저 자신들의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권접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실연자로서의 저작권접권과 CG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경쟁법상 성과보호 위반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CG와 RL은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침해금지, 손해배상, 정보제공 및 음반 폐기를 위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04년 지방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후 함부르크 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BGH)을 거치며 사건은 장기간 계속되었다. 2008년 연방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환송 후 2011년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다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였다. 2012년 연방대법원도 Pelham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재판소원에 대하여 2012년 연방대법원 판결, 2008년 연방대법원 판결, 그리고 2011년 고등법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세 번째 상고 절차에서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첫 번째 선결재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9년 소위 Pelham 판결이 선고되었다.¹⁾ 당시 사법재판소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에 근거하여, 제3자가 타인의 음반에서 오디오 조각을 가져와 다른 음반에 삽입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반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조각이 변경된 형태로 삽입되어 청취로 인해 재인식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라고 판시하였다. 또 다른 음반의 음악 조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다른 음반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 판결 후 연방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함부르크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고, 고등법원은 2022년 4월 28일 판결에서 사건을 세 시기로 나누어 판단하였다.²⁾

고등법원은 첫째, 지침의 국내법 이행 시점인 2002년 12월 22일 이전에는 당시 독일 저작권법의 자유이용(제24조)에 근거하여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둘째, 그 이행 기간 만료 이후부터 저작권법 제51a조가 도입되어 시행된 2021년 6월 7일 전까지의 기간에는 침해를 인정하고, 문제된 음반 수에 관한 정보 제공, 음반 복제물의 폐기를 위한 인도, 손해배상책임의 확인을 명하였다. 셋째, 2021년 6월 7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51a조의 패스티시 예외에 따라 침해를 부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세 번째 부분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특히 패스티시 예외의 의미를 둘러싼 의문 때문에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재판을 요청하였다.³⁾

3. 법적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문제된 샘플링이 원칙적으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1) CJEU, Judgment of 29 July 2019, C-476/17, Pelham. 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구 저작권법 제24조와 같은 일반적 자유이용 조항이 정보사회지침 제5조의 열거적 예외·제한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독일은 202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제24조를 폐지하고, 캐리커처·패러디·패스티시에 관한 제51a조를 도입하였다.

2) OLG Hamburg, Urteil vom 28.04.2022 – 5 U 48/05. 사실관계 및 재판진행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끝나지 않은 음악샘플링 재판의 분석과 전망, 이슈리포트 2022-25 참조.

3) BGH, Beschluss vom 14.09.2023 – I ZR 74/22.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둘째, 그러한 이용이 2021년 이후 기간에는 패스티시 제한사유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후자의 쟁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연방대법원이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은, 지침 제5조 제3항 (k)의 패스티시 예외가 적어도 샘플링을 포함하는 기존 저작물과의 예술적 대화를 위한 포괄조항인지, 아니면 유머, 스타일 모방, 오마주와 같은 제한적 기준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함부르크 고등법원의 사실인정과 직접 관련된다. 고등법원은 Nur mir가 Metall auf Metall의 리듬 시퀀스를 환기시키면서도 지각 가능한 차이를 보이고, 스타일 모방이나 유머는 없지만 다른 장르 안에서 원곡에 대한 암시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바로 이러한 예술적 대화 자체가 패스티시의 인정에 충분한지, 아니면 더 좁은 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두 번째 질문은 ‘패스티시 목적의 이용’이라는 독일 저작권법 제51a조의 법문언과 관련된다. 연방대법원은 패스티시를 목적으로 한 이용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이용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해당 이용이 패스티시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를 묻고 있다.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연방대법원은 이 점도 유럽사법재판소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국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패스티시 개념의 외연과 그 적용기준을 둘러싼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내용

1) 패스티시 개념과 요건

유럽사법재판소는 연방대법원의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지침 제5조 제3항 (k)의 패스티시 예외가 적어도 샘플링을 포함한 기존 저작물과의 예술적 대화를 위한 포괄조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유머의 표현, 스타일 모방, 오마주와 같은 추가적 제한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⁴⁾

사법재판소는 먼저 지침 제5조 제3항 (k)가 회원국으로 하여금 복제권과 공중전달권에 관하여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를 목적으로 한 이용에 대해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⁵⁾ 이어 패스티시는 지침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 의미에 관하여 회원국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EU법의 자율적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EU에서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⁶⁾ 이로써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를 개별 회원국의 전통적 이해에 맡기지 않고, EU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율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4)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32.

5)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33.

6)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34.

사법재판소는 다음으로 패스티시 개념의 통상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법재판소는 법무관의 의견을 원용하면서, 패스티시라는 표현은 일상적 언어사용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아니며, 비록 일반적으로는 어떤 작품, 작가, 또는 동일한 예술적 조류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작품을 가리키는 데 쓰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해가 병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⁸⁾ 예컨대 어떤 견해는 기망적 의도로 행해진 숨겨진 모방까지도 패스티시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다른 견해는 종전 작품의 특징적 요소를 공개적이고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그것과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를 형성하는 경우만을 패스티시라고 본다고 하였다.⁹⁾ 또한 일부 견해는 패스티시를 유머적 또는 풍자적 모방으로 한정하고, 다른 견해는 스타일 모방으로 한정하지만, 또 다른 많은 견해들은 패스티시에 해당하는 이용이 오마주, 유머 또는 비판의 표현, 순수한 스타일 연습 등 다양한 형태와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¹⁰⁾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의 통상적 의미만으로는 개념을 명확히 정할 수 없으므로, 그 해석은 문맥과 규정의 목적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¹¹⁾

지침 제5조 제3항 (k)의 문맥 해석과 관련하여 사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패스티시와 함께 캐리커처 및 패러디를 같은 규정 안에 나란히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¹²⁾ 이 세 개념이 하나의 규정에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입법자가 이들 사이에 일정한 공통적 핵심을 전제하였음을 시사한다고 보았고, 그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기존 저작물을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지각 가능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라고 설명하였다.¹³⁾ 그러나 사법재판소는 여기서 곧바로 세 개념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법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동등하게 병렬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서로 일부 중첩될 수는 있지만 각각 독자적인 실효성을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이용 유형을 허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았다.¹⁴⁾ 따라서 세 개념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나머지 둘과 사실상 동일하게 해석하거나, 법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¹⁵⁾

이러한 전제에서 사법재판소는 두 개의 극단적 견해를 모두 배척하였다. 첫째, 패스티시는 패러디 및 캐리커처와 마찬가지로 유머의 표현 또는 조롱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¹⁶⁾ 만약 패스티시에 유머나 조롱을 필수요건으로 요구한다면, 패스티시는 패러디나 캐리커처와 실질적으로 같은 범위를 가지게 되어 독자적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가 기존 저작물을 환기시키고 그에 비하여 지각 가능한 차이를 보이는 모든 창작물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¹⁷⁾ 그

7) Opinion of Advocate General Emiliou delivered on 17 June 2025, C-590/23.

8)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35.

9)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36.

10)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37.

11)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38.

12)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39.

13)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40.

14)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41.

15)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41.

16)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42.

렇게 되면 오히려 패러디와 캐리커처라는 다른 두 예외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법재판소는 지침 제 5조 제3항 (k)의 문맥이나 더 넓게는 지침 제5조 전체의 문맥 어디에서도, EU 입법자가 패스티시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재의 모든 형태의 창작적 이용을 위한 포괄개념으로 상정하였다고 볼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¹⁸⁾

사법재판소는 이어서 지침 제5조 제3항 (k)의 목적을 검토하였다. 이 조항은, 특히 전자적 매체 환경에서, 한편으로 권리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다른 한편으로 보호대상 이용자들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그리고 공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¹⁹⁾ 사법재판소는 지침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만, EU 기본권 헌장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은 결코 절대적·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며, 헌장 제11조와 제13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와 비교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²⁰⁾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패스티시 예외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권리자들의 권리와 이익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그리고 공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¹⁾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목적과 기본적 자유 보장의 요청에 부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²²⁾

그러나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 개념의 확장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사법재판소는 우선 패스티시가 보호대상에 대한 숨겨진 모방이나 표절은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다.²³⁾ 설령 그러한 이용형태가 일정한 경우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의 범주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허용되는 패스티시로 해석하는 것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용자들의 기본권 및 공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스티시는 보호대상에 대한 ‘공개 이용’의 형태를 전제로 하며, 그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패스티시가 적어도 ‘숨겨진 모방’이나 ‘표절’과는 구별되는 공개적이고 대화적인 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 개념의 적극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법재판소에 따르면 패스티시는 단순히 원작과 구별되는 차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러한 차이가 원작의 환기와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원작과 인식 가능한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를 형성하여야 한다.²⁴⁾ 여기서 그러한 대화 성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물 안에서 이용된 요소들이 그것이 유래한 저작물 또는 저작물들을 특징짓는 요

17)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43.

18)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44.

19)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45.

20)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46.

21)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47.

22)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48.

23)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49.

24)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50.

소들이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⁵⁾ 또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요소의 이용만이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패스티시 예외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러한 보호된 요소들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예외는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²⁶⁾ 나아가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스타일 모방, 오마주, 또는 유머적이거나 비판적인 예술적 대화가 포함된다고 보았다.²⁷⁾ 이로써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의 핵심을 특정한 형식적 표지에 두지 않고, 원작과의 관계적 구조, 곧 ‘인식 가능한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사법재판소는 특히 음악 샘플링의 위치를 분명히 하였다. 사법재판소는 이용자가 대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음반으로부터 오디오 조각을 추출하고 이를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 즉 샘플링이 예술의 자유에 속하는 예술적 표현형식임을 재확인하였다.²⁸⁾ 다른 한편으로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의 오디오 조각이 청취로 인해 재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음반에 수록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투자 보호라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의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하였다.²⁹⁾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예술의 자유의 보호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음악곡의 리듬 시퀀스의 차용이 샘플링의 방식으로 패스티시 예외 안에 들어가고, 다만 그렇게 추출된 오디오 조각이 앞서 제시한 요건들³⁰⁾을 충족하는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에 달성된다고 보았다.³¹⁾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 제한사유는, 포괄조항은 아니지만, 하나 또는 여러 기존 저작물을 환기시키고 지각 가능한 차이를 보이며, 샘플링을 포함하여 그 저작물의 보호된 일부 요소를 이용해 원작과 인식 가능한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를 형성하는 저작물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³²⁾

2) 패스티시 목적의 이용과 주관적 의사

연방대법원은 두 번째 질문에서 지침 제5조 제3항 (k)에서 말하는 ‘패스티시 목적의 이용’이 이용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패스티시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를 물었다.³³⁾ 즉, 이용자가 실제로 “나는 패스티시를 하고자 한다”는 내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과물의 성격만 객관적으로 패스티시로 인식 가능하면 되는지가 문제였다.

25)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51.

26)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52.

27)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53.

28)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55.

29)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56.

30) para 49 – para 53.

31)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57.

32)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58.

33)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59.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물 안에서 기존 저작물의 보호되는 특징적 요소들이 이용되어, 그 저작물과 인식 가능한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⁴⁾ 다시 말해, 패스티시라는 분류는 원작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이용자의 내심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재판소는 이어 법무관의 의견을 원용하면서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이용이 실제로 패스티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³⁵⁾ 따라서 문제는 이용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가 아니라, 그 요소들이 차용된 기존 저작물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이용이 패스티시로 인식될 수 있는가이다. 이 점에서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의 판단기준을 철저히 객관화하였다. 즉, 패스티시의 여부는 주관적 의도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원작을 아는 수용자에게 결과물이 어떠한 성격으로 지각·인식되는가의 문제로 전환된다.

그 결과 사법재판소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지침 제5조 제3항 (k)에서 의미하는 ‘패스티시 목적의 이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요소들이 차용된 기존 저작물을 알고 있는 자에게 패스티시로서의 성격이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³⁶⁾ 이용자의 내심의 의도에 대한 별도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 판시는 향후 패스티시 예외의 적용에 있어 큰 실무적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주관적 상태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확실한데, 사법재판소는 이를 배제하고 결과물과 수용자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판단구조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5. 평가 및 전망

이 판결은 패스티시를 둘러싼 해석론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법재판소는 한편으로 패스티시를 모든 창작적 재이용을 위한 포괄조항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 재판소는 패스티시가 ‘기존 저작물을 환기시키고 지각 가능한 차이를 보이는 모든 창작물’을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며, 그러한 식의 해석은 패러디와 캐리커처라는 다른 예외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재판소는 패스티시를 유머, 조롱, 스타일 모방 또는 오마주와 같은 특정 형식적 요소에 종속시키지도 않았다. 즉 패스티시는 유머나 조롱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으며, 스타일 모방 또한 가능한 한 형태일 뿐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법재판소는 지나치게 넓은 이해와 지나치게 좁은 이해를 동시에 배제하면서, 패스티시를 기존 저작물과의 인식 가능한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라는 관계적 구조를 중심으로 정립하였다.

34)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60.

35)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61.

36) CJEU, Judgment of 14 04.2026, C-590/23, para.62.

이 판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패스티시 개념을 기본권 향량의 맥락 속에서 명확히 위치시킨 데 있다. 사법재판소는 지침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부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헌장 제17조 제2항의 지식재산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헌장 제11조와 제13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형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패스티시 예외는 단순한 저작권 제한규정의 하나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적 재이용과 예술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특히 샘플링을 예술의 자유에 속하는 예술적 표현형식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음반제작자의 투자보호와의 균형을 요구한 점은, 사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단순한 저작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상충하는 기본권과 법익 사이의 조정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이 판결은 패스티시의 성립요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무에 일정한 기준을 제공한다.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물이 하나 또는 여러 기존 저작물을 환기시키면서도 지각 가능한 차이를 보이고, 원작의 특징적 요소를 이용하여 그와 인식 가능한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패스티시 예외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요소의 이용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재판소는 패스티시를 단순한 비보호 영역의 이용으로 축소하지도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강하게 다투어졌던 패스티시 개념은 적어도 일정한 윤곽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은 새로운 해석문제를 남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라는 요건의 구체적 밀도이다. 어느 정도의 관계 형성이 있어야 단순한 차용을 넘어 ‘대화’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자에게 인식 가능하여야 하는지는 여전히 후속 판례가 채워야 할 문제이다. 특히 판결이 세 가지 핵심 표지, 즉 선행 저작물의 환기, 지각 가능한 차이,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를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정작 그 핵심요건인 ‘대화’의 질적 요구 수준은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모든 식별 가능한 작품 참조에는 최소한의 선택과 소통의 요소가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요건이 실제로는 거의 항상 충족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강한 질적 관계를 요구하는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³⁷⁾

또한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에서 숨겨진 모방과 표절을 배제하면서 공개적 이용을 요구하였지만, 무엇이 충분히 공개적인 이용인지 역시 사안별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의 예로 공개적 스타일 모방, 오마주, 유머적 또는 비판적 예술적 대화를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예시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고, 어느 정도의 독자적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판결은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 그 기준의 구체적 운용은 앞으로 하급심과 학설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37) Greta Sparzynski / Tarmio Frei, Ein Pastiche umfasst den Dialog mit dem Werk, Legal Tribune Online, 15.04.2026.

한다. 이러한 개방성은 한편으로 법적용의 분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사안의 예술적 특수성과 상충하는 기본권을 보다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도 가진다.³⁸⁾

독일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상당 부분 가능하게 한다. 연방대법원이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은 사실상 함부르크 고등법원이 인정한 “유머도 스타일 모방도 아니지만, 원곡을 환기시키며 다른 장르 안에서 암시적으로 관계를 맺는 샘플링”이 패스티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법재판소는 바로 이러한 유형의 창작적 이용을 패스티시 개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샘플링도 패스티시 예외의 가능한 적용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핵심을 원작과의 인식 가능한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에서 찾았다. 따라서 2021년 6월 7일 이후 기간에 관한 한, 연방대법원이 함부르크 고등법원의 결론을 유지하고 Pelham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실제로 그러한 대화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적어도 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원고 측이 기대할 수 있는 반전의 가능성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³⁹⁾

이 판결의 영향은 독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를 EU법의 자율적 개념으로 파악하였으므로, 앞으로 다른 회원국 법원들도 더 이상 자국의 전통적 이해만을 근거로 이를 해석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프랑스와 같이 패스티시를 전통적으로 유머적·풍자적 또는 희화적 스타일 모방에 가까운 협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법문화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이번 판결 이후 수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반대로 독일에서는 2021년 저작권법 제51a조의 입법이유에서 Remix, Meme, GIF, Mashup, Fan Art, Fan Fiction, Sampling까지 포괄할 수 있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였는데, 이러한 광의의 접근 역시 사법재판소가 패스티시를 포괄조항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무제한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결국 앞으로 EU 차원에서 패스티시는 모든 창작적 재이용의 일반조항도 아니고, 유머나 스타일 모방에 한정된 협의 개념도 아닌, 원작과의 인식 가능한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라는 중간적 모델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실무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남는다. 특히 밈, 매시업, 리믹스, GIF와 같은 디지털 환경의 변형적 이용에 관해서는, 이번 판결이 원칙적 틀은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경계설정까지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언제 ‘지각 가능한 차이’가 인정되는지, 언제 이용자가 원작과 ‘창조적 대화’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소셜미디어상의 대량적·일상적 창작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판례 축적을 통해서만 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Pelham 사건 자체의 귀결에는 상당한 방향성을 부여하였지만, 밈·리믹스 시대의 이용자 일반에게는 아직 충분히 명확한 지침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⁴⁰⁾

38) Greta Sparynski / Tarmio Frei, Ein Pastiche umfasst den Dialog mit dem Werk, Legal Tribune Online, 15.04.2026.

39) Tobias Nasr / Clara Louisa Veelken, „Metall auf Metall“ (bald) auserzählt, beck-aktuell, 14.04.2026.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번 판결은 패스티시를 둘러싼 유럽 저작권법의 불명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도, 동시에 후속 판례가 구체화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남겼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종결점이라기보다 출발점에 가깝다. 앞으로 연방대법원 판결은 사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실제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며, 다른 회원국 판례와 학설도 이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판결은 샘플링 분쟁에 관한 개별 해결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변형적 이용과 예술의 자유를 유럽 저작권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CJEU, Judgment of 14 April 2026, Case C-590/23(<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affair?lang=EN&searchTerm=C-590%2F23>)
- Opinion of Advocate General Emiliou delivered on 17 June, Case C-590/23 (<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jurisprudence?lang=EN&searchTerm=C-590%2F23&sort=SCORE-DESC>).
- Tobias Nasr/Clara Louisa Veelken, "Metall auf Metall" (bald) auserzählt, beck-aktuell, 14.04.2026 (<https://www.beck-aktuell.de/node/196261>).
- Greta Sparynski/Tarmio Frei, EuGH-Urteil zu "Metall auf Metall" von Kraftwerk, In: Legal Tribune Online, 15.04.2026 (https://www.lto.de/persistent/a_id/59724).
- 박희영 , 끝나지 않은 음악샘플링 재판의 분석과 전망,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2-25.

40) Tobias Nasr / Clara Louisa Veelken, „Metall auf Metall“ (bald) auserzählt, beck-aktuell, 14.04.2026.